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8. 9. 3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8년 8월 22일 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8월 25일

다. 상정일자 : 제138회 임시회 제3차위원회 (2008. 9. 3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기획예산과장 정 상 택

가. 개정이유

마포구 종합청사의 최첨단 시설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종합행정타운 시설관리 사업을 위탁 운영하게 됨에 따라 공단 주요사업 현황을 추가하고, 어려운 법령용어와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용어 및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용어 등을 쉽고 적절한 용어로 개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

나. 주요 개정 내용

1)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주요사업 내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

○ 변경 전

-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사업
-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 운영 사업

- 견인보관소 관리 운영 사업
-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 운영 사업
- 기타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가 위탁하는 사업
- 상기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

○ 변경 후

-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사업
-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 운영 사업
- 견인보관소 관리 운영 사업
-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 운영 사업
- 구의 공공용청사 및 복지시설 등의 관리 운영 사업
- 그 밖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가 위탁하는 사업
- 상기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

나. 어려운 법령 용어,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용어 및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용어 등을 쉽고 적절한 용어로 변경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○ 동 개정조례안은 신축중인 구 종합청사가 준공되면 청사관리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안 제27조제6호에 구의 공공용청사 및 복지시설 등의 관리 운영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고, 동 조례안의 자구중 어렵고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용어 등을 법제처의 법령안 입안심사기준에 맞게 법률용어를 순화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**질의 및 답변요지** : 생 략

5. **토론요지** : 없 음

6. **심사결과** : 원안가결

7. **소수의견의 요지** : 없 음

8. **기타사항** : 없 음